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42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12월 19일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마을버스 사업자가 서울시에 보고하는 사항을 “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”에서 “회계감사 등으로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여부 결과를 보고하는 것”으로 변경할 경우 보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,
- 이미 서울시와 마을버스조합이 '20년 5월 합의문을 체결하여 재정지원 받은 사업자는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고내용을 현행조례와 같이 유지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시장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안 제3조의2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중 “회계감사 등으로 재정지원금의 적정사용여부”를 “회계감사를 받고 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(의원발의안)	수정안(위원회안)
<p>제3조의2(외부회계감사)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 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</p>	<p>제3조의2(외부회계감사) ----- ----- ----- ----- <u>회계감사 등으로 재정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</u> ----- ----. <u>다만 시장은 사업자가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시행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조의2(외부회계감사) ----- ----- ----- ----- <u>회계감사를 받고 그</u> ----- ----- ----. < 후단 개정안과 동일 ></p>
<p>제7조(지원제외)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재정지원 및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.</p>	<p>제7조(지원제외) ----- ----- <u>제6조</u> ----- ----- <u>평가, 정산보고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	<p>제7조 < 개정안과 동일 ></p>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시장은 사업자가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시행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 중 “제5조”를 “제6조”로, “평가”를 “평가, 정산보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